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
------	-----

제출년월일 : 2000. 9.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2000. 1. 1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 7급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신설된 7급이상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의 면제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지 않기로 하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관계법인 도시계획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국가유공자에 대한 재산세, 자동차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부하는 중상이자 및 그 단체와 유족에 대한 면제범위를 차등화 함(안 제2조)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 중 도시계획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 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
- 라.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평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본문중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를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로 하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신설

동조 제2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제20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하며,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를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②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취득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단서 생략)</p>	<p>② ----- ----- -----7급----- ----- ----- ----- ----- ----- ----- ----- ----- ----- ----- ----- ----- ----- -----</p>
<p>제20조(사권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의 -----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 -----</p>	<p>(현행과 같음)</p> <p>제20조(사권토지에 대한 감면)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 -----</p>